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달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308

발의연월일: 2024. 11. 6.

발 의 자:이달희·강선영·고동진

김상욱 • 이인선 • 김예지

김장겸 · 서범수 · 유용원

김상훈 • 조은희 • 김소희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르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하고 있으나,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는 최장 21세에 퇴소하여야 하므로 자립역량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시설 퇴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.

한편,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,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종사자의 자격기준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명확히 없어 실무상 확인하 기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연

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명 문화하고, 성폭력 피해자 보호·지원 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범죄경력 조회 규정을 신설함(안 제16조의2 및 제19조의 3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6조의2(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 특례) ① 입소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제16조제1항 각 호 본문에 따른 보호시설(제12조제3항제2호의 장애인보호시설은 제외한다)의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으면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종사자"를 "종사자(이하 "상담원등"이라 한다)"로 한다.

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3(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) ①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제19조제1항제3호·제3호의2·제4호에 따른 상담원 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상담 소·보호시설·통합지원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도경찰청장 또 는 경찰서장에게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상담원등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를 상담소·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 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·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・범위 등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 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16조의2의 개정
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19세 미만에 보호시설
에 입소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6조의2(미성년자에 대한 보호
	시설 입소기간 연장 특례) ①
	입소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는
	제16조제1항 각 호 본문에 따
	른 보호시설(제12조제3항제2호
	의 장애인보호시설은 제외한
	다)의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
	때 그 기간을 연장할 의사가
	있으면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
	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	② 제1항에 따른 입소기간의
	연장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
	<u>부령으로 정한다.</u>
제19조(상담원 등의 자격기준) ①	제19조(상담원 등의 자격기준) ①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
당하는 사람은 상담소, 보호시	
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, 상담	
원 또는 그 밖의 <u>종사자</u> 가 될	
수 없다.	<u> "상담원등"이라 한다)</u>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19조의3(결격사유 확인을 위한

범죄경력 조회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제 1항제3호·제3호의2·제4호에 따른 상담원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 를 받아 해당 상담소·보호시 설·통합지원센터의 소재지를 <u>관할하는 시·도경찰청장</u> 또는 경찰서장에게 「형의 실효 등 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 다. 다만, 상담원등이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를 상담소・보호시 설 및 통합지원센터에 직접 제 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.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

-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를 요청받은 시·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 죄경력조회의 절차·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